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건축구조물 조립 안전보건작업 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1편 총칙 제6장 제2절(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) 및 제2편 제5장(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)의 규정에 의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(Precast concrete)부재를 이용한 건축구조물 조립작업 안전보건에 필요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(Precast concrete)부재를 이용한 건축구조물 조립작업 중 부재의 검사, 보수, 운반, 하역, 조립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프리캐스트 콘크리트(Precast concrete: 이하 "PC"라 한다)"라 함은 공사의 건식화와 공기단축을 도모하여 공장이나 건설현장 내에서 제작하고, 접합부는 콘크리트에 의한 충전 또는 기타 접합방식으로 현장 조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콘크리트 부재를 말한다.
 - (나) "슬링(Sling)"이라 함은 걸어 매다는 용구 및 그 부속품의 총칭 또는 줄 걸이 작업을 말한다.
 - (다) "지그(lig)"라 함은 제품이나 부재를 운반하기에 적합하게 설계, 제작된 보조기구를